

제 목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관 임기조항에 대한 법령해석 부칙

부 록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관 임기조항에 대한 법령해석 부칙

있도록 「국세기본법」(법률 제12848호, 2015. 1. 1. 일부개정)(이하 “개정된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 제5항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정된 법은 2015.

-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인 자는 「국세기본법」 제67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67조 제5항 및 부칙 제1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는 2015. 1. 당시 조세심판관인 자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조세심판관이 아닌 자는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국무조정실 소속 C(일반직 고위공무원)은 2011. 10. 24. 조세심판관의 직위에 임명되어 3년간 근무한 후 2014. 10. 23자로 1차 임기를 마치고, 2014. 10. 24. 자로 중임되어 조세심판관으로 근무하다 2014. 12. 22. 부처 간 인사교류에 의해 국세청 ▽국장(2014. 12. 22.~2015. 12. 21.)으로 인사발령되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C의 복귀에 앞서 2015. 11. 6.과 2016. 3. 4.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C를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련 법규의 해석사항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016. 4. 8. 인사 협신처로부터 “C은 조세심판관 직위에서 국세청 ▽국장으로 전보되었으므로 조

1. 업무 개요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2015. 1. 1. 개정된 같은 법 제67조 제5항 등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령해석 업무를 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임용 등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법률 제12162호, 2014. 1. 1.,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 만 연임1)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동일인이 장기간 조세심판관의 직위에 있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2)할 수

1) 연임: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서 그 직위에 머무는 일

2) 중임: 연속 여부에 불구하고 먼저 근무하고 다시 근무하면서 직위를 다시 맡는 일

제3항판단 업기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교류의 규정 및 취지와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해 볼 때, 인사교류자가 인사교류시점에서 교류종료 후 원소속기관으로 부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회신받은 후 같은 해

4. 14. 기획재정부에 다시 C이 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해 주도록 질의하였다.

한편, C은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된 2015. 1. 1.에는 국세청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인사혁신처 의견(2016. 4. 8.)과 같이 조세심판관으로서의 중임 입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부칙 제14조에서 연임을 보장하는 “조세심판관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C이 인사교류에 동의한 것을 조세심판관 직에 대한 사임의사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C이 인사교류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권리와 기대이익을 보유³⁾하였으므로 조세심판관의 직위로 복귀하지 못한다고 해석을 할 경우 정부·권장·정책인 인사교류에 적극 참여한 자의 권익을 덜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사유로 2016. 4. 21. C은 “조세심판관인 자”에 준하여 개정된 「국세기본법」경과규정이 적용된다는 법령해석⁴⁾을 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6. 4. 25. 국무조정실에 위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하였고, 국무조정실은 2016. 5. 6. C을 조세심판관으로 임용하였다.

그 결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67조 제5항 및 부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없었던 C이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에 의해

조세심판관으로서 임용되게 되었다.

법률에 근거해 볼 때, 인사교류자가 인사교류시점에서 교류종료 후 원소속기관으로 부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회신받은 후 같은 해

4. 14. 기획재정부에 다시 C이 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해 주도록 질의하였다.

한편, C은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된 2015. 1. 1.에는 국세청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인사혁신처 의견(2016. 4. 8.)과 같이 조세심판관으로서의 중임 입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부칙 제14조에서 연임을 보장하는 “조세심판관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C이 인사교류에 동의한 것을 조세심판관 직에 대한 사임의사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C이 인사교류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권리와 기대이익을 보유³⁾하였으므로 조세심판관의 직위로 복귀하지 못한다고 해석을 할 경우 정부·권장·정책인 인사교류에 적극 참여한 자의 권리 덜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사유로 2016. 4. 21. C은 “조세심판관인 자”에 준하여 개정된 「국세기본법」경과규정이 적용된다는 법령해석⁴⁾을 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6. 4. 25. 국무조정실에 위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하였고, 국무조정실은 2016. 5. 6. C을 조세심판관으로 임용하였다.

그 결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67조 제5항 및 부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없었던 C이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에 의해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경과조치에 대해 견해가 대립된 상황에서 국세예규심사 위원회에 부의 하였던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문언이 명확하게 규정된 법령에 대하여는 최대한 문언에 충실히 해석하도록 하고 문언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어서는 법령해석을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기획재정부의 추가 해석이 있다면 그 취지에 따라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C은 당시 심판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인사교류에 응했고, 인사교류 후 심판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신뢰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국세기본법」부칙에 C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국세기본법」에 대한 법령해석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가진 조세심판관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보다 정당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격 요건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개정된 「국세기본법」부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2015. 1. 1. 법 시행 당시의 조세심판관이므로 국무조정실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없었던 C이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에 의해 임용된 문제가 있어 이를 통보하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C은 일반적 품무원으로서 「공무원임용령」 제48조 및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28호) 제57조의7 등의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 후 원소속기관인 국무조정실로의 복귀는 가능합니다.

4)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건을 상정하였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2016. 4. 21. C은 개정된 「국세기본법」부칙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고 의견

부 록

외부장의 등 미신고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제 목 관 청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용

1. 업무 개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¹⁾, 그리고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각각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와 「국무조정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심사, 평가, 자문 등(이하 “외부장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장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²⁾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부장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 포함)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직원의 대외활동요령」 제5조 및 「외부집필활동에 따른 처리절차 및 기준」(2014. 7.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소속 직원이 장의 및 강연을 포함한 모든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소속 직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대학, 단체, 업체 등의 외부기관(이하 “신고대상 외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외부장의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강의 등 의 수행 일시, 대가 등을 각각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체입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거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6. 11. 14.~12. 8.) 중 2014. 1. 1.부터 2015.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인원 문제

가. 외부장의 등 미신고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및 「국무조정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외임활동요령」(2013. 12. 20. 국민권익위원회)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부장의 신고 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감사담당관에게 위임전제한다고 되어 있음

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된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무 기관으로서 총 2회에 걸쳐 외부장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각급 행정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

12. 31까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직원의 외부장의 등에 대한 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무조정실의 경우 **임금** 소속 ▶팀장 D은 15회에 걸쳐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외부장의 등을 수행하고 계 4,637,600원을 수령하였는데도 이를 행동장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등 [별표 1]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의 외부장의 등 미신고 현황”과 같이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 14명이 행동장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계 32건의 외부장의 등을 수행하여 계 9,047,600원의 대가를 수령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파 소속 E은 8회에 걸쳐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외부장의 등을 수행하고 계 3,350,000원을 수령하였는데도 이를 행동장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등 [별표 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외부장의 등 미신고 현황”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5명이 행동장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계 14건의 외부장의 등을 수행하여 계 5,600,000원의 대가를 수령하였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 F은 18회에 걸쳐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외부장의 등을 수행하고 계 22,689,710원을 수령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별표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직원의 외부장의 등 미신고 현황”과 같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직원 11명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계 50건의 외부장의 등을 수행하여 계 55,232,660원의 대가를 수령하였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는 등 소속 직원의 외부장의 등 대외활동에 대처 차리. 감독을 체대로 하지 않고 있다.

나. 임직원 행동장령 미개정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권고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장령 표준안」(2013. 9. 25.)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대가를 받는 외부장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되, 외부장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장령 표준안」에 맞게 내부규정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직원 행동장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소속 직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직유관단체, 학술 및 연구단체에 외부장의 등을 실시할 경우 연구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직원 행동장령」(2009. 4. 2.)을 2016년 11월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장령 표준안」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 직원의 외부장의 등에 대한 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표 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 직원의 외부장의 등 미신고 현황”과 같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 직원 20명이 위 표준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게 신고해야 할 공직유관단체, 학술 및 연구단체에서 수행한 외부장의 등 계 357건을 신고하지 않은 채 강의료 등으로 계 449,053,060원의 대가를 수령하였다.

그 결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장령 표준안」에 맞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입지 원 행동장령」이 개정되지 않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소속 직원들의 외부
장의 등 활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는 등 소속 직원의 외부
장의 등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관제기관 의견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외부장의 등 신고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교육
및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하는 등 소속 직원의 외부장의 등 대외활동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장령 표준안」을 기준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위 표준안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장의 등에 대해 사전 결재나 신고 없이 외부장의 등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별표 1]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의 외부장의 등 미신고 현황

(단위: 원)

성명(직급)	부서	연번	요청자	수행일자	활동종류	대가금액
G	-	1	-	14. 9. 29.	발표	400,000
H	-	2	-	14. 2. 15.	토론	200,000
I	-	3	-	14. 5. 28.	강의	200,000
J	-	4	-	15. 11. 6.	강의	210,000
K	-	5	-	15. 4. 24.	강의	300,000
L	-	6	-	14. 3. 20.	강의	200,000
M	-	7	-	14. 9. 23.	강의	500,000
N	-	8	-	15. 4. 14.	강의	300,000
합계(총 14회, 322회)						
4,637,600						
9,047,600						

성명(직급)	부서	연번	요청자	수행일자	활동종류	대가금액	
		9	-	-	-	200,000	
		10	-	-	15. 3. 4.	수행회계부	1,200,000
		-	-	-	-	200,000	
		11	-	-	14. 10. 30.	기준	200,000
		-	-	-	-	200,000	
		12	-	-	14. 1. 7.	증거	200,000
		13	-	-	14. 2. 21.	증거	200,000
		-	-	-	-	400,000	
		14	-	-	15. 2. 10.	토론	300,000
		-	-	-	-	300,000	
		15	-	-	15. 11. 25.	강의	300,000
		-	-	-	-	300,000	
		16	-	-	15. 2. 24.	토론	300,000
		-	-	-	-	300,000	
		17	-	-	14. 11. 6.	설명회	200,000
		-	-	-	-	200,000	
		18	-	-	14. 4. 24.	강의	313,300
		19	-	-	14. 7. 7.	강의	220,000
		20	-	-	15. 5. 6.	강의	350,000
		21	-	-	15. 5. 7.	강의	230,000
		22	-	-	15. 5. 12.	강의	300,000
		23	-	-	15. 5. 13.	강의	313,300
		24	-	-	15. 5. 20.	강의	300,000
		25	-	-	15. 5. 27.	강의	360,000
		26	-	-	15. 6. 15.	강의	300,000
		27	-	-	15. 6. 15.	연설회	300,000
		28	-	-	15. 6. 22.	강의	400,000
		29	-	-	15. 7. 6.	강의	230,000
		30	-	-	15. 10. 16.	강의	360,000
		31	-	-	15. 12. 10.	증거	350,000
		32	-	-	15. 12. 14.	강의	230,000
		-	-	-	-	4,637,600	
합계(총 14회, 322회)							
9,047,600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을

- 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별표 1」에 기재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정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 ② 앞으로 소속 직원이 사전 결재나 신고 없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동보)

卷之三

제 세	국 제	특 근대식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소 속	관 제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1. 업무 개요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 기관이 조세심판원은 매년 특근예식비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특근예식비 집행 부적정

卷之三

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
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1인당 6,000원 이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

七

또한 「국고급판리법」 제24조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제2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해야 하고 체임소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자가 카드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관(2016. 11. 14.~12. 8.) 중 국무조정실 ○○실 4개 부서¹⁾ 및 조세심판원의 2015년도²⁾ 특근매식비 짐행내역³⁾을 확인해 본 결론, [표 1]과 같이 국무조정실 ○○실 등 4개 부서와 조세심판원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구내식당 주식회사 ●●에서 계 228,233,200원 상당의 식권⁴⁾을 매기적으로 일괄 구매하여 별도 식권 관리내장 등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채 직원에게 일정 매수⁴⁾의 식권을 나누어 줌으로써 실제 직원들이 식권을 특근매식 짐행하였는지 아니면 접선 등에 짐행하였는지를 알 수 없도록 짐행⁵⁾하였다.

[표 1] 실제 특근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특근매식비를 짐행한 현행[2011.5년]

부서	집행액 (A)	설계 독립 여부를 일수 없도록 집행한 내용			집행 비율 (C=B/A)
		구내식당 식권 일괄 구매	정사 인건 비용 창부 절세	계(B)	
영업부 영업팀	66,240,000	36,750,000	35,050,000	69,200,000	100%
	27,157,200	18,452,700	16,351,300	36,156,000	100%
	80,935,000	57,040,000	46,917,000	74,577,000	100%
	80,850,000	15,538,000	50,622,500	66,370,500	100%
기획전략부 기획전략팀	(25,045,700)	14,135,500	13,615,500	14,550,000	98.5%
	47,745,200	22,133,200	23,134,200	40,004,275,500	99.7%

- 1) ○◎성, 성, ○◎성, 성
- 2) 2016년에도 2015년과 동일하게 식권을 일괄 구비하여 나눠 주고, 청사 주변 식당에 장부를 터치하여 수시로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또 근대식서비스를 전개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는 ○○식 등 4개 회사 및 조세실업학원의 2015년 결제액이 2015년 국무조정부에서 실적 특근예비비 결제액 1,065백만 원(44%)을 집행
- 3) 2015년 국무조정부 및 국무총리실에서 실적 특근예비비 결제액 1,065백만 원(44%)을 집행
- 4) 통상 1인당 월별 15만 원
- 5) 예산 및 기금유용 계획 체계적지침(기획재정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시간 이상 투근 후 진행하기로 하고, 규정에 허락하여 2시간 간격으로 진행하기도 하는 등 혼용하여 진행하였다으며, 점령기록을 유지하지 않아 그 금액을 각각 명기하여 신경하기는 어려움

그리고 국무조정실 ○○실 등 4개 부서 및 조세심판원은 정부세종청사 주변

외부 식당을 이용하면서 실제 특근한 직원이 정부구매카드 영수증에 서명하는 대신 [장부6]를 비치하고 직원들이 이용하여 누적 기록된 금액을 각 부서 서무담당 공무원이 일정 주기마다 수시로 일괄 결제하는 방법으로 [표 1]과 같이 총 1,026회에 걸쳐 232,194,300원을 집행하였다.

시각장애인무기록 및 관련 소명자료를 토대로 특근매식비 부당 집행액을 산정해 본 결과, [표 2]와 같이 총집행액 471,188,520원 중 127,573,520원을 특근여부와 무관 하게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집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2015년 토론판부당집행액 산정

周易·繫辭上·卷一

청사 외부 식당 부당 이용 사례

■ 2007年6月15日(土) 15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16日(日)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17日(月)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18日(火)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19日(水)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20日(木)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21日(金)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22日(土)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23日(日)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24日(月)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25日(火)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26日(水)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27日(木)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28日(金)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29日(土)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 2007年6月30日(日) 10時30分 滋賀県高島市

나. 주제성평원 업무추진비 집행부 적정

구무조정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매년 업무추진비 예산을 현성·집행하고 있다.

17

「국가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예전에는 기금을 통해 청탁에 소요되는 경비 및 따르면 업무총진비(240만 원)는 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족무식 등 국식적인 엄숙성이 수요되는 경비로 전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 및 기금·유용계회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210-12특)로

소속 직원의 생일에 소액의 상품권, 케이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기타운영비

11

따라서 조세업계의 업무추진비 집행자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 직원에 계
관통하게 나눠주는 방법 등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복리후생비(210-12목)로 소속 직원의 기념일에 채익,

(6) 식당 정부는 사용일자, 사용금액, 사용자 1명의 서명을 기록되어 있고 사용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실제 독근율하고 식탁을 이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

쿠키 등을 지급8)하고, 기타유영비(210~16목)로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을 집행9)하면서도 2015. 12. 29. '2015년 조세 심판원 전 직원 성과목표 달성 포상'이라는 명목10)으로 전 직원 117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해피머니 상품권을 균등하게 배부하면서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계 5,791,500원을 집행하는 등 [표 3]과 같이 2014년과 2015년에 업무추진비 계 11,385,000원을 예산 폭격 외로 집행하였다.

[표 3] 업무추진비 목적 외 집행 명세

년도	지급금의원	집행 목적	집행 내용	금액	비고
2014년	2014. 12. 30.	업무추진비	2014년 12월 특근비율 50%인 경우 특근비율 50%인 경우 특근비율 50%인 경우 특근비율 50%	5,350,500	총보통비율 5,350,500원 별도 기준
2015년	2015. 12. 29.	업무추진비	2015년 12월 특근비율 70%인 경우 특근비율 70%인 경우 특근비율 70%인 경우 특근비율 70%	5,791,500	총보통비율 7,791,500원 별도 기준
				11,385,000	

부록 2) 국무조정실 예산 확장 분석

관계기관 의견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앞으로 특근매식비와 업무추진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기본경비·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운영비-복리후생비 예산에 1직원 1기념일 축하선물로 1인당 50,000원을 청탁하여 차원 신령에 따라 개인 쿠커 등을 지급하고 있음

9) 기본경비-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운영비-기타운영비 예산으로 2015년 1월 및 같은 해 7월에 직원 업무 표상으로 각각 1,400,000원 계 2,800,000원을 청탁하는 등 해녀 우수 직원 및 부서 경력급을 치행하고 있음

10) 2015년 조세심판원 성과지표로 사업처리비율 목표치 75.0%로 설정한 후 78.6%를 달성하여 전 직원 평균 실적치가 하였다고 하나, 2015년 목표치를 2011년 목표치 75.0%와 동일하게 설정한 점, 2011년 이후 4년간 평균 실적치가 77.7%6) 2011년 77.3%, 2012년 77.8%, 2013년 75.2%, 2014년 80.4%인 점을 감안할 경우 기관 전체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전 직원 표상으로 업무추진비를 치행할 명분은 확보

卷之三

제	특근예식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국무조정실
관	조세심판원
체	국무총리
기	법무부
관	법무부
제	법무부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은 매년 특근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부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특근비 첨부
부칙장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첨부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무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1인당 6,000원 이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고급부리법」 제24조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제2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해야 하며 체입소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자가 카드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부서	집행액 (A)	설비 특구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집행한 내역			집행 비율 (C=A/A)
		구역별 구매	식권 사용	청사 현금 지급	
총무부	66,246,000	39,029,000	15,150,000	66,246,000	100
기획부	47,115,720	36,112,700	40,353,300	86,466,000	63%
총무부 기획부	113,361,720	75,141,700	55,503,300	152,611,000	74%
기획부	30,147,000	17,740,000	40,517,000	78,277,000	67.5
기획부 총무부	36,480,000	35,033,000	50,022,900	86,533,900	69.2
기획부 총무부 기획부	106,715,000	62,803,500	146,537,900	142,203,900	75.7
기획부 총무부 기획부 기획부	471,265,520	225,223,200	232,151,300	460,457,500	97.7

1) 2015년에도 2016년과 동일하게 식권을 일괄 구매하여 나눠 주고, 청사 주변 식당에 창부를 비치하여 수시로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특근비식별로 침행하였으며, 이번 칩사에서는 ○○설 등 4개 부서 및 조세심판원의 2015년

특구부식비 집행 현황을 표본조사하여온
2) 2016년 구금조정서 및 구금총장부서 신체 토구대시비 지급액 1,652백만 원 중 471백만 원(44%)은

3) 2015년 11월 15일 첫 출판. 저작권자: 김기현

5) 「예산 및 기금운용세칙」(기획재정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시간 이상 특근 후 진료하기도 하고, 규정을

그리고 국무조정실 ◎실 등 4개 부서 및 조세심판원은 정부제종청사 주변
부부 식당을 이용하면서 실제 특근한 직원이 정부구매카드 영수증에 서명하는
장부⑥를 비치하고 직원들이 이용하여 누적 기록(회) 금액을 각 부서 서무답량
부무원이 일정 주기마다 수시로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표 1]과 같이 총 1,026회에

시각의 근무기록 및 관련 소명자료를 토대로 특근매식비 부당 집행액을 산정해 본 결과, [표 2]와 같이 총 집행액 471,188,520원 중 127,573,520원을 특근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2015년 특근대식비 부당 지급액 산정

烟叶的品种很多，如烤烟、晾烟、晒烟等，但以烤烟为多。

성사 외부 식당 부당 이용 사례

나. 조세심판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국무조정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매년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예산 및 기금유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240목)는 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 및 기금유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210-12목)로 소속 직원의 생활에 소액의 상품권, 케익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기타운영비(210-16목)로 우주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자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법 등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북리후생비(210-12목)로 소속 직원의 기념일에 채익,

(6) 식탁·작나무는 사용금액, 사용자, 사용금액, 사용자 1명의 서명부 기록되어 있고 사용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실제 목록을
하고 식당을 이용하면서도 이용할 수 없음

쿠커 등을 지급8)하고, 기타유영비(210~16목)로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을 집행9)하면서도 2015. 12. 29. '2015년 조세심판원 전 직원 성과목표
달성을 포상'이라는 명목10)으로 전 직원 117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해피머니
상품권을 균등하게 배부하면서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계 5,791,500원을 집행
하는 등 [표 3]과 같이 2014년과 2015년에 업무추진비 계 11,385,000원을 예산
목적 외로 집행하였다.

[표 3] 업무추진비 목적 외 집행 명세

년도	처금결정일	납부 목적	납부 내용	금액	(단위: 원)	
					비고	
2014년	2014. 12. 30	2014년 결산	전 직원 1인당 5만원	5,791,500원	술도착비	비율 5,500,000원 별도 결제
2015년	2015. 12. 29	2015년 결산	전 직원 1인당 5만원	5,791,500원	술도착비	비율 7,000,000원 별도 결제
					(1,500,000)	-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제77호

관계기관 의견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앞으로 특근매식비와 업무추진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조세심판원은 앞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8) 기본경비-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운영비-복리후생비 예산에 1차원 1기념일 축하선물로 1인당 50,000원을
부상장비-직원 선별에 따라 차액, 쿠키 등을 지원하고 있음

9) 기본경비-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운영비-기본유형비 예산으로 2015년 1월 및 같은 해 7월에 직원 업무
포상으로 각각 1,400,000원과 2,800,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예전에는 등 배분 우수 직원 및 부서 경쟁급여로 있음
10) 2015년 조세심판원 성과지표로 시장처리비율 목표치 75.0%로 설정한 후 78.6%를 달성하여 전 직원 포상을
하였다. 그러나 2015년 목표치 75.0%와 동일하게 설정한 점, 2011년 평균 실적치가 77.7%였던 2012년 77.3%, 2013년 75.2%, 2014년 80.4%인 점을 감안해 경우 기관 전체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전 직원 포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점은 옳음

감사문

시정요구

제 목 비정규직 직원용 관사 취득 업무 부적정

소 관 계 관리국
내 용 국무조정실

위 관사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장차관용 관사 3개를 입차하기 위해, 정부청사시설기준에 따른 장관급 주거시설 크기(198m²)와 차관급 주거시설 크기(165m²)를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근 대전광역시의 아파트 시세(1m²당 1,731천 원)를 근거로 장차관용 관사 입차비용 913,968,000원을 산출¹⁾ 하였고, 2012. 5. 7.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배정을 신청하여 2012. 6. 8. 예비비

9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부청사시설기준에 해당하는 크기의 장차관급 주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2012. 10. 8. 국무조정실장, 국무1차장, 2012. 11. 22. 국무2차장의 관사2)를 임차하여 총 5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9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은 「국가재정법」 제45조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위 집행 잔액 3억 9천만 원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예산의 목적 와 사용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집행 잔액 3억 9천만 원을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 비정규직 직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원들에게 거주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별표」 「비정규직 직원용 관사 청탁」과 같이 2012. 11. 28. 관사 14개를 임차하는 데 집행하였다.

1) 산출내역(913,968,000원)

- 장관급(1명): 198m²×1명×1,731천 원 = 342,738천 원
- 차관급(2명): 165m²×2명×1,731천 원 = 571,230천 원

2) 차관급 관사 현황 - 도로명 주소

관사[0] 품자	전용면적	보증금	주소
국무조정실장	119.35m ²	1억 0천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그린아파트 7동
국무1차장	114.24m ²	1억 0천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그린아파트 7동
국무2차장	113.33m ²	1억 0천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그린아파트 7동

국무조정실은 2012. 6. 7. 장차관용 관사 임차 비용 명목으로 예비비 9억 원을 배정받아 5억 1천만 원을 집행하고, 2012. 11. 28. 집행 잔액 3억 9천만 원으로 비정규직 직원용 관사 14개를 입차하여 사용 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이나 다른 비목으로 이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사는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예비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불용 처리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더욱이 2016. 11. 30. 현재 위 관서 14개 중 8개는 비정규직 직원이 거주하고 있고, 6개는 「표」와 같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가량 거주하는 직원이 없어 비어 있는 상태이다.

[표] 비정규직 직원용 관서 공실 현황

번호	호수	주소	임차계약 해지여부	국고반납 금액	보증금	전용면적
1		세종특별자치시 - 동 - 호	X	2,800	-	14.07
2		-호	X	2,800	-	15.51
3		-호	O	2,800	2,800	14.51
4		-호	O	2,800	2,800	14.07
5		-호	X	2,800	-	15.51
6		-호	O	2,800	2,800	21.40
7		-호	X	2,800	-	15.51
8		-호	X	2,800	-	14.51
9		세종특별자치시 - 동 - 호	O	2,800	2,800	16.29
10		-호	X	2,800	-	16.76
11		-호	O	2,800	2,800	16.95
12		-호	O	2,800	2,800	17.20
13		-호	O	2,800	2,800	18.29
14		-호	O	2,600	2,600	17.20
합계				39,000	22,200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기구별

관계기관 의견 국무조정실은 14개의 비정규직 직원용 관서 중 기존에 비어 있던 6개의 관서와 감사기간 이후 추가로 공실이 발생한 2개의 관서(ㄴ.ㅂ, ㄴ.ㅅ)

를 포함한 총 8개 관서의 계약을 2016. 12. 2. 해지하고 계약해지로 발생한 보증금 222,000,000원은 2016. 12. 15. 국고로 반납처리하였으며, 현재 비정규직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6개의 관서도 2017년 상반기 안에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보증금 168,000,000원을 국고에 반납하였다.

[별표]

비정규직 직원용 관서 현황

(단위: 만 원, m²)